

## 요약

스위스는 최근 보험감독법(VAG) 및 해당 조례(AVO)를 대폭 개정하였음.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평가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근거를 제공하고, 감독 규제에 비례원칙을 도입하였으며, 보험중개업자에게 더 강화된 의무와 요건을 요구함. 또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위험 수준에 따른 감독 체계를 설정하고, 독자적인 보험회사 구조조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음

- 스위스는 최근 보험감독법(Versicherungsaufsichtsgesetz; VAG) 및 해당 조례(Versicherungsaufsichtsverordnung; AVO)를 대폭 개정하고, 향후 2년 내 시행할 예정임<sup>1)</sup>
  - 스위스 보험감독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업자 감독에 관한 법률로, 최근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의 현대화 필요성 및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이 추진됨
  - 2016년 연방의회가 연방재무부(Eidgenössische Finanzdepartement; EFD)에 초안 작성을 의뢰하고, 2020년 10월 21일 개정안이 의회에 회부되었으며, 2022년 3월 18일 최종 승인되었음
  -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 또한 개정될 예정이며, 2023년 7월 1일 또는 2024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임
-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평가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근거를 제공하고, 감독 규제와 관련하여 비례원칙을 도입해 회사 규모, 시장 신규진입 여부, 보유 기술 등을 고려한 감독 체계를 마련하였음
  -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은 솔벤시II(Solvabilität II)에 기초한 스위스 지급여력테스트(Schweizer Solvenztest; SST)에 의해 평가되는데, 개정안은 SST에 대한 공식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
    - 평가 요소에는 판매 중인 보험의 종류, 사업의 규모와 지리적 범위, 위험 정도, 지급여력 마진에 대한 자기자본 등이 포함됨<sup>2)</sup>
  - 감독 규제에 있어서는 대기업 및 그룹에 대한 감독은 강화하는 한편, 스위스 금융시장의 미래 생존 가능성 향상을 위해 신규 회사 및 소규모 회사, 인슈어테크 및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
  - 기타 보험회사는 보험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기능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비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며, 금융시장감독청(Eidgenössische Finanzmarktaufsicht; FINMA)의 허가가 있는 경우 보험사업과 관련

1)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함: PwC(2022), "Teilrevision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(VAG)"; Joachim Frick(2022. 9. 27), "Switzerland: Insurance supervision laws revised", Baker McKenzie; CAPLAW(2021. 2. 16), "Insurance Supervision Act - Overview of the Ongoing Revision"

2) The Legal 500(2022. 10. 28), "Switzerland INSURANCE & REINSURANCE"

성이 없는 사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

- 단 피보험자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없을 것, 보험회사가 관련 위험을 통제할 것, 금융시장감독청의 감독에 과도한 어려움이 없을 것을 요함

○ 보험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독립중개업자와 종속중개업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였으며, 보험상품 판매 시 더 강화된 정보제공의무 및 적정성 확인 의무 등을 부과하고, 추가적인 요건을 제시하였음

- 개정안은 독립중개업자와 종속중개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, 특히 독립중개업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있음
  - 독립중개업자는 반드시 금융시장감독청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고, 제3자로부터 커미션, 리베이트, 그 밖의 금융 혜택을 제공받는 경우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, 그 외에도 전문자격, 청렴도, 최소 200만 프랑 이상의 전문배상보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보증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됨
-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적정성 확인 의무, 이해상충 방지 의무, 중요정보 제공 의무 등을 부담함
  - 이러한 의무는 금융서비스법(Bundesgesetz über die Finanzdienstleistungen, Finanzdienstleistungsgesetz; FIDLEG)상의 의무와 유사하며,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모두 동등한 조건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임
  - 보험중개인은 보험상품을 추천하기 전에 해당 상품이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지, 상품을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함
  - 또한 보험중개 시 이해상충 방지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어 이를 회피할 수 없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며, 보험상품 판매자는 고객의 선택권 보장 및 상품 간 비교 가능성 향상을 위해 중요사항설명서(Basisinformationsblatt; BIB)를 작성하고,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함

○ 보험계약자와 관련해서는 전례 없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위험과 보호의 필요성에 따른 감독 체계를 설정하고, 보험회사에 대한 독자적인 구조조정제도를 도입하였음

- 종래 스위스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없었고<sup>3)</sup> 별다른 감독 체계 구분 없이 일반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만 구분하였으나, 개정안은 사업 부문과 고객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특정 위험에 따라 감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
  - 즉, 전문보험계약자<sup>4)</sup>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회사는 간소화된 감독 규제의 적용이 가능하며, 회사 규모 및 보험 상품의 위험 수준에 따라 완전 또는 부분적 감독 면제도 가능함
  - 다만 전문보험계약자와 계약 체결 전 보험계약자 본인에게 전문보험계약자임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하며, 전문보험계약자로 구분됨에 따른 법적 효력에 대해 알려야 할 것이 요구됨
- 또한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파산 시에도 보험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독자적인 구조조정제도를 도입하였음
  - 기존 보험감독법은 구조조정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파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조조정에 대한

3) The Legal 500(2022. 10. 28), "Switzerland INSURANCE & REINSURANCE"

4) 전문보험계약자의 구분은 보험계약법(Versicherungsvertragsgesetzes; VVG)의 정의에 따름; 기업연금 제공 기관, 은행법에 따른 금융중개업자, 보험회사, 공공기관 및 전문위험관리회사, ① 결산 총액 2,000만 프랑, ② 순수입 4,000만 프랑, ③ 자기자본 200만 프랑 조건 중 2가지 이상 초과 회사 등(제98a조)

가능성만 언급하였을 뿐이고, 금융시장감독청은 계약이전과 같은 보호조치 명령만 가능하였음

- 보험회사 파산 시 종래에는 일반적인 도산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 또는 당국이 권한을 가졌으나, 개정안으로 인해 금융시장감독청이 파산에 관한 관할권을 보유하게 되었음<sup>5)</sup>
- 이와 관련하여 금융시장감독청은 필요한 경우 구조조정 시행을 위한 규칙을 발행할 수 있으며, 보험회사는 재무 안정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이행할 것이 요구됨

---

5) Advestra Insights(2022. 5), "Insurance restructurings under the revised Swiss Insurance Supervisory Act and the draft EU Insurance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: Some observations"